

#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

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29일

## 광 주 광 역 시 장

### 1 지원 개요

- 지원규모 : 1,500억원(은행 협약자금) ※ 하반기 800억원 예정
- 취급은행 : 시중 은행 12개사
  - IBK기업은행, 광주은행, NH농협은행,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새마을금고, 수협은행, 신협, 산업은행, SC제일은행
- 지원조건
  - 상환 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
  - 대출 금리 :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
- 지원 한도액 : 업체당 3억원 이내
  - ※ 프리(PRE)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업체당 5억원 이내
- 이차 보전율 : (기본) 2% ~ (최대) 4%
  - ※ 프리(PRE)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1% 추가 지원(항목별 중복 불가)
  - ※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기업 : 1% 추가 지원

### 2 지원 및 제외대상

#### □ 일반경영안정자금

-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  -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~ 34) [붙임 1]



- ④ 기업 확인서(중소기업, 소기업, 창업기업) 1부
    - [중소벤처24(www.smes.go.kr/)에서 발급 가능]
  -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[붙임 4]에 해당하는 서류(최근 3개월)
  -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관할세무서 발급)
  -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(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)
    - 2025. 1. 1.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  -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: 관련 허가증
  - ⑨ 인증서 사본 1부(PRE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광주형일자리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) ※ 해당 시
  -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
   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표준 재무제표(2개년),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
- ※ 연간 비교 :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 
 반기 비교 :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,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 
 분기 비교 :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,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

## 4 지원 결정

- 통보내용 :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
- 통보기관 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→ 시, 지원대상업체, 취급은행
- 대출취급기한 :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, 1회 연장 가능
  - ※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

## 5 기타 사항

-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
-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※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
  - 제출처 : 기금융자관리시스템 → 내 사업관리 →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
  -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
-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
  - 단,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

- 본 공고 이외 사항은 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의하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문의사항 :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 
일자리경제실(☎ 062-531-6332, 062-956-2647)

**붙임 1****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제조업 코드(10 ~ 34)**

해 당 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(코드)
○ 식료품 제조업	10
○ 음료 제조업	11
○ 담배 제조업	12
○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	13
○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4
○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15
○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외)	16
○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17
○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
○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
○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20
○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1
○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22
○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
○ 1차 금속 제조업	24
○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25
○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
○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7
○ 전기장비 제조업	28
○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
○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
○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1
○ 가구 제조업	32
○ 기타 제품 제조업	33
○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34

**붙임2****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범위**

해 당 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(코드)
○ 도로화물 운송업	493
○ 해상 운송업	501
○ 항공 운송업	51
○ 화물 취급업	5294
○ 보관 및 창고업	5210
○ 물류터미널 운영업	52913
○ 화물 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	52992
○ 화물 포장,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	52993
○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	76390
○ 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	74212
○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(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함)	381 (39009)
○ 폐기물 처리업	382
○ 폐수 처리업	37012
○ 컨테이너 임대업	76190
○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	76320
○ 건축,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	72

**붙임 3****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**지식서비스업체(제6조제1항제5호가목 관련)

해 당 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(코드)
○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581
○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※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	5821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	5911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5912
○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59201
○ 전기 통신업	61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 정보서비스업	63
○ 연구개발업	70
○ 광고 대행업	7131
○ 옥외 및 전시 광고업	71391
○ 경영 컨설팅업	71531
○ 제품 디자인업	73202
○ 시각 디자인업	73203
○ 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	73209
○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○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○ 사업시설 유지·관리 서비스업	741
○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	7532
○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
## 붙임 4

## 공장등록증 대체 서류

### 가. 기본 제출서류

공통사항		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	
제조업	공장 등록업체	공장등록증	
	공장 미등록업체	500㎡ 이하	건축물관리대장 (용도: 공장 또는 제조)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
		500㎡ 이상	신청 불가

### 나. 제조업 공장등록 대체 가능 업종 증빙서류

증빙서류	해당업종
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증	자동차정비업
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·신고 허가서 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6항)	인쇄사, 양곡가공, 인삼제조, 사료제조, 비료생산, 도축업, 축산물가공업, 계량기 제조업, 물질제조, 유해화학물질, 가축분뇨재활용, 먹는샘물, 건강기능식품, 의지보조기구, 골재채취업, 건설기계사업, 자동차폐차업, 수산물가공업

### 다. 서비스업 공장등록 대체 제출서류

증빙서류	해당업종
사업장 사진 4장 (상호노출 사진 포함)	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
사업관련 등록증, 인허가증 또는 관련 계약서 및 매출증빙서류	